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080100538 www.donjokgol.co.kr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 20080930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20241024
정보공개서제공날짜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돈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가맹본부 돈푸드 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66(석촌동 14-6)

대표전화: 02-2202-0186

대표팩스: 02-2202-0185

담당부서: 영업부 02-2202-018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7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5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2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9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돈푸드 시스템	돈족골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66(석촌동 14-6)			
	설립일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10.16.	개인사업자.	2007.10.16.	김부곤	02- 2202-0186	02- 2202-0185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15-19-45519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하게 될 명칭·상호 등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등갈비 전문점 돈족골	
상 호	돈족골(행정동 이름)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200182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는 2008년 1월 가맹사업을 실시한 개인 사업자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푸드시스템)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비 고
2021년	854	854	0	0	0	0	-772	-772	
2022년	2,413	2,083	330	0	0	0	-770	-770	
2023년	2,535	2,315	220	0	0	0	-768	-768	

(직영점:송과본점)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비 고
2021년	277,914	69,021	208,892	891,411	360,820	530,591	60,266	66,553	
2022년	363,069	118,889	244,179	1,186,885	478,499	708,385	113,586	118,889	
2023년	356,088	123,055	233,033	1,234,324	417,046	817,278	120,632	123,055	

그 근거자료는 별첨1,2,3,4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관련임원	김부곤	대표자	2003. 12 ~ 현재	돈족골 대표자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비관련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 료일(가맹본 부사용기간)
돈족골 (상표권)		2008. 5.7. 출원 2010.8.20. 등록	출원 제2008-0012142호 등록 제0200182호	김부곤	2030.8.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돈족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2008년 1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3년 12월 17일)

2. ‘돈족골’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돈푸드시스템	돈족골	김부곤	2008.1.10. ~ 현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66

3. “돈족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돈족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등갈비,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돈족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경기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돈족골”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0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0

6. “돈족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돈족골”외에 타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또한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산정기준

[돈족골] 가맹점 사업자가 없습니다.

8. 직전연도 말 [돈족골]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돈족골] 가맹점 사업자가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돈죽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사 및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돈죽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및 판촉	소계		-	-	-	
	TV		-	-	-	
	신문		-	-	-	
	인터넷		-	-	-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송파헬리오시티지점		송파구 송파대로 345	02-3431-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 절차]

- 1)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한 후 회원기본정보 입력합니다.
- 2) 프랜차이즈B2B클릭 후 주민/사업자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3) 가맹 본부명(돈푸드시스템)을 클릭합니다.
- 4) 약관 및 사업자정보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맹점사업자 에스크로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 5) 가맹금 입금계좌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합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등록이 되어있는가?
- 가맹계약 체결시 실명번호와 맞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되었는가?
- 주민등록번호로 가맹계약을 체결-개인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자번호로 가맹계약을 체결-기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맹금 예치증서 출력 방법(가맹금 입금 후 출력가능)

로그인→계약정보 조회 클릭→하단의 예치증서 출력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 뒷면 계속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손괴, 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손괴, 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뒷면 계속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돈죽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저-일금팔천삼백팔십만원(83,800,000)~최고-일금일억육백팔십만원(106,800,000)”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및물품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800				
계약금	1,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 및 당사의 무형 재산권으로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맹비로 대체
잔금	7,800	신규교육일 1일 전	2개월 이내 또는 신규교육 전에 계약 해지시 반환	가맹점 모집 및 당사의 무형 재산권으로 비용 소요	실제 소요된 인건비 및 경비를 공제하고 반환함.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2,000	행사실시 1주전	Open 행사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환	Open 행사시 (도우미,홍보차량,전단지,사은품)으로 비용 소요	가맹점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2) 계약이행 및 물품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총 계	3,000		

계약이행 및 물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예상개점일 7일 이전	본사와의 계약 위반 및 가맹점에 공급된 물품의 대금을 지불치 않는 경우.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3,8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800
가맹비	8,800
신규 교육비	없음
계약이행 및 물품보증금	3,000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32㎡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0,000~ 93,000				
초별구이기 1대 재별구이기 1대 작업대 1조 외 기타 장비	돈푸드시스템	5,500	137.5	계약금:발주시 30% 잔금: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돈푸드시스템, 협력업체	43,000~ 52,000	1,075~ 1,300	계약금:발주시 30% 잔금:완공 1일 이전	공사전 계약취소	132㎡기준하여 3.3㎡늘때마다 1,200 추가비용발생
간판	협력업체	3,000~ 10,000		해당업체와 협의	제작 전 계약취소	
주방기물 및 홀용품	돈푸드시스템, 협력업체	11,000~ 13,000		계약금:발주시 30% 잔금:설치 1일	발주 전 계약취소	

				이전		
POS	협력업체	2,500		해당업체와 협업	설치 전 계약취소	
닥트시설	협력업체	5,000~ 10,000		해당업체와 협업	설치 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로 일금 삼백만원(W3,000,000)을 가맹본부에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2202-0186)	담당자 배정→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최적의 입지 도출→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돈족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 작성일 1일 이내에 일금 일백만원(W1,000,000)을 예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신규교육일 1일 이전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월정액으로 가맹본부에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돈푸드시스템	가맹점 별 매출액 대비	다음 월 20일			전국규모의 Brand Image광고시 본사50%,가맹사업자가 50%부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전체수수료의50%등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1,500 ~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보장금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분 담없음				강제하지않음 29쪽 참조
재고관리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돈푸드시 스템	연 12%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사업자가 금전지급의무 지체시(계약서 제16조 제3항,제23조 제2항-상품.자재에 대한 금액)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현재 가맹사업자가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돈족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가맹본사인 “돈푸드시스템”에 가맹비10,800(부가세포함)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계약서 제2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0 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점포의 영업을 양도, 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승인을 얻지 못하고 양도, 전대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② 본 계약 기간 중 가맹 사업자가 영업을 양도, 전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맹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③ 제 1 항의 승인은 60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④가맹본부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양수인, 전대인은 가맹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⑥ 전대인에 대하여는 가입비가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돈죽골”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돈푸드시스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돈죽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품목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구이용 등갈비(box)	-	-	당사
2	찜용 등갈비(box)	-	-	당사
3	소스(통)	-	-	당사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돈족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전 연도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당사는 “돈족골” 가맹사업자가 없으므로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당사가 “돈족골”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특수관계인 없음)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등갈비 소금구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계약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진행됨.
등갈비 바비큐양념구이			
등갈비 고추장양념구이			
흑돼지 삼겹살			
양념 돼지 갈비			
항정살			
갈매기살			
등갈비 목은지 김치찜			
얼큰 김치찌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주류 (소주, 맥주 기타주류)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계약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진행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등갈비 소금구이	16,000(350g)	판매가격 변동시 서류로 통보	2023.12. 31. 기준
등갈비 바비큐			
등갈비 고추장			
흑돼지 삼겹살	19,000(170g)		
양념 뼈돼지갈비	20,000(300g)		
목항정살	20,000(150g)		
갈매기살	20,000(150g)		
등갈비 목은지 전골	11,000(1인분)		
콩나물 김치찌개	8,000(1인분)		
동치미 국수	5,000(1인분)		
직접 눌린 누룽지	5,000(1인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갈비 또는 돼지고기 구이 전문으로 하는 가맹 사업	돈죽골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매장기준 반경 최소2km 이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돈죽골”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돈죽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돈족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5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5조 3항
○ “돈족골” 매장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5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조 3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6조 1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제6조 1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6조 1항
○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6조 1항

일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6조 2항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6조 2항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조 2항
○ 소비자불만이 30일간 2회 이상 접수되고,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만사항이 재발하여 접수된 경우	제6조 2항
○ 식품유효기간 등의 법적인 위생기준을 위반하여 당국에 적발 조치되거나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2항

○ 가맹사업자가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과 관련된 점포내외의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한 경우	제6조 2항
○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6조 2항
○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하지 않는 경우	제6조 2항
○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6조 2항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 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서 제6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6조 1항에 의하여 1회 최고와 더불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제5조 4항
○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인구의 증가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상승하거나 매출이 급감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행 및 물품보증금”의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경우.	제5조 4항
○ 천재지변, 토지수용 및 기타 국가행정시책에 의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4항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규약·금전적 지급 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60일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즉시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즉시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허락 없이 가맹사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일지역 내에서 ‘돈죽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당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등갈비, 돼지고기나 기타 식사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돈죽골” 매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외 가맹점주로부터 위탁 받은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5) 매장의 유지보수

귀하는 고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귀하의 결정에 의하여 청결한 점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합니다.

6) 영업기록 및 보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경영지도위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등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자격, 허가 종업원 고용 등

매장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허가증은 귀하께서 자비로 영업일 이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 또는 퇴직시켜야 합니다.

9. 상표 및 지식재산권 준수

1) 가맹사업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0.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돈죽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전국규모의Brand Image 광고	50%	50%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최종 분담금 확정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33.22㎡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3,800~106,8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13,8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70,000~93,000
도면협의 및 일정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간판 시공	- 도면 협의 및 시공	D-24~15(10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6일)	
물품보증금	- 계약이행 및 물품보증금	D-5(1일)	
주방기물 및 기기 입고	- 초벌, 재벌 구이기 세트 - 주방기기 및 기물 입고	D-4~2(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2)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뒷면 계속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돈족골” 매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교육 중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정기 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돈족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6일	없음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1인/1일/ 5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 11조(교육 및 훈련)에 의하여 개점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은 필히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뒷면 계속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직영점 중 송파본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0년 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34,32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2-2202-018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 무 상 태 표

제17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돈푸드시스템

제15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손 익 계 산 서

제17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돈푸드시스템

제15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재 무 상 태 표

제2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돈죽골(송파 직영점)

제1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손 익 계 산 서

제2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돈족골(송파 직영점)

제1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